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671호 2026. 6. 2.(화)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 울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4
- 울산광역시 동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3

안 내	○ 동구 전자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정기)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수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동구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 동구소식 → 고시/공고 → 동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 동구 편집 : 기획예산실(☎ 209-3047, 행정 3047)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564호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2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1. 제정이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복합문화공간의 목적(안 제1조)
- 복합문화공간의 명칭 및 기능(안 제2조 ~ 제3조)
- 운영시간 및 휴관일(안 제4조)
- 시설사용료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안 제5조 ~ 제7조)

3. 제정조례안: [붙임 1]

4. 근거법규: [붙임 2]

- 「울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4조
-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22일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참조: 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 주 소: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교육정책과)
- 팩 스: 052-209-3209
- 전자우편: mini5052@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정책과(052-209-4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https://www.donggu.ulsan.kr>) [동구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조례		
의 건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귀하			

【붙임 1】 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조성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하 “복합문화공간”이라 한다)의 명칭은 “책놀이터 북적북적”으로 하며, 위치는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로 18로 한다.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복합문화공간은 책놀이터, 채움놀이터, 별별살롱, 북적온마루, 스튜디오실, 편집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복합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 열람 및 대출 서비스 제공
2. 어린이 대상 독서·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
3. 지역주민의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을 위한 가족친화형 소통공간 운영
5. 그 밖에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복합문화공간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복합문화공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임시휴관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복합문화공간의 이용 등) ① 복합문화공간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구민의 놀이 체험·학습·소통·동아리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사용을 우선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등)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대출자료 외 복합문화공간 자료의 무단 반출 및 훼손 금지
2. 사전 승인 없이 집회, 설문조사, 게시물 부착, 상행위, 광고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금지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또는 방해를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용중지, 퇴관 또는 회원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별 사용료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 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원)	비 고
북적온마루	1회 (2시간)	50,000	-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30분마다 기준액의 100분의 30을 가산 - 시설 이용은 도서관 운영 시간 내로 제한 -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시설 장비 파손 시 변상 - 편집실 및 스튜디오실은 초·중·고등학생 동아리 사용 시 무료
별별살롱	1회 (2시간)	30,000	
채움놀이터	1회 (2시간)	20,000	
스튜디오실	1회 (2시간)	20,000	
편집실	1회 (2시간)	20,000	

【별표 2】

시설 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기준(제6조 제2항 관련)

○ 감면기준

감면율	대 상	비 고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0%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비 서류	-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국가보훈등록증 -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면제 기준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
- 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별표 3】

시설 사용료의 반환 기준(제6조 제3항 관련)

구 분	반환 기준
관리·운영주체의 귀책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개시일 전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개시일 이후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변경)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사용목적				
사용일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간 회)		
사용 시설명			사용인원	
장비 사용여부		빔프로젝트(), 냉·난방시설(), 마이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설이용 관련 안내		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뒷면 작성(서약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뒷면)

서 약 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다 음

가.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조례」의 시설

사용허가 사항을 준수한다.

나.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호·유지하며, 이를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

다. 사용기간 중 행사 관계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책임은 서약자가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료 감면(면제)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명)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사용목적				
사용시설				
사용일시		년 월 일 : ~ 년 월 일 : (일간)	사용인원	명
감면(면제)사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시설 사용료 감면(면제) 정보 관리	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감면(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명)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취 소 사 유 (반 환 사 유)				
납 부 액				
반환청구액				
반환계좌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시설 사용료 반환 정보 관리		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 2】 근거법규

☐ 울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4조(독서문화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등을 포함한 작은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운영 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설비에 대한 조건)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서관자료는 1,000권 이상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2. 삭제<2023.05.25.>
3. 전용면적이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
5. 지역의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565호

울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2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1. 개정이유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 하고, 사업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구체화(안 제4조 제1항)
- 독서문화행사 참여자에게 무상 체험 및 기념품·도서 등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 신설(안 제4조 제5항~제7항)

3.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4. 근거법규: [붙임 2]

-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 제14조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22일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참조: 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 주 소: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교육정책과)
 - 팩 스: 052-209-3209
 - 전자우편: mini5052@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정책과(052-209-4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gu.ulsan.kr>) [동구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의 건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
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귀하

【붙임 1】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환경 개선 등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 사업
2. 도서관 주간, 도서관의 날,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 행사
3. 작가초청 강연회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공연·전시·체험 행사
4. 백일장, 다독자 선발,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동아리, 독서교육, 북스타트 등 독서프로그램 운영
6. 성별·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문화 체험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 및 체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상품권 등의 종류·수량·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⑦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제적 또는 폐기 대상 자

료를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독서문화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환경개선 2. 도서관 주간, 도서관의 날,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3. 작가초청 강연회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공연·전시·체험 행사 4. 백일장, 다독자 선발, 독후감 경진 대회, 도서교환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 동아리, 독서교육, 북스타트 등 독서프로그램 운영 6. 성별·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문화 체험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등을 포함한 작은 도	

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
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③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 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운영 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활성화 를 위해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 및 체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 나, 기념품·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 다. ⑥ 제5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상 품권 등의 종류·수량·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 한다. ⑦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 련하여 도서관의 제적 또는 폐기 대 상 자료를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게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 다.

제6조(독서의 달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
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독서의 달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작가 초청 강연회 등 독서 교육
행사
2. 백일장, 다독왕 선발대회, 독후
감 경진대회, 도서교환 등 독서 관
련 행사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계몽 및 홍
보 활동
4.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삭 제>

【붙임 2】 근거법규

□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0. 31.]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567호

울산광역시 동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2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 및 실제 조사 운영여건을 반영하고
-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형식과 용어, 조사사무 절차 규정 등 현행 규칙 전반에 대하여 정비·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세무조사 관련 정의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 나. 지방자치단체간 협업 프로세스 마련(안 제5조~ 제6조)
- 다.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반영(안 14조)
- 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 강화(안 제17조,제19조,제22조,제27조)
- 마. 세무조사 절차 투명화 및 명확화 정비(안 제19조~제2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세무1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 1)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동구청), 세무1과
2) 팩스: 052-209-3259
3) 이메일: poodle74@korea.kr

4.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1과(052-226-3571)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이 규칙 개정안은 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gu.ulsan.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자치법규명	울산광역시 동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동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동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세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조사사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현장확인”이란 조사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세무조사 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업무
 - 나.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의 사실관계 확인 업무
 - 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감면 적용 후 추정 사유 또는 중과세 대상 여부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업무
 - 라.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사건조사의 파생자료로서 단순한 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 마. 납세자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의 확인 업무

바. 납세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확인 또는 기장 확인 업무

사.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 출장 및 확인이나 탈세 체보자료, 과세대장·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 업무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업무

3. “조사사무”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의 실시, 조사결과의 통지,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경정, 사후관리 및 조사 관련 통계관리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4. “조사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5.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기선정”이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시선정”이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정기선정 외의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특별세무조사”란 일반세무조사 외에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기획세무조사 또는 긴급세무조사 등을 말한다.
10. “기획세무조사”란 업종별·지역별·거래유형별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1. “긴급세무조사”란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등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2. “합동조사”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3.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4. “서면조사”란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세자로부터 장부등을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5. “통합조사”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6. “세목별조사”란 법 제8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7. “부분조사”란 법 제8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구청장은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사업장·거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사방법의 자문, 조사인력의 지원, 쟁송사건 대응 등 조사사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자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의 원칙)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해야 한다.

제9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선정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하여 그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수시선정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정보자료 수집, 현지확인 등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세무조사 유예)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
4.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받은 중소기업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해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11조(중복조사 금지)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 착수 후 중복조사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및 준비

제12조(연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세무조사 연간계획을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세무조사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3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연간계획에 따른 일반세무조사 또는 긴급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실시 목적
2.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 및 대상선정 사유
4. 조사방식
5.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범위
6. 그 밖에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방식의 결정,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의 설정 등 조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조사방식)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유, 업종, 규모, 납세이력, 사업현황 및 과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② 서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 환경, 업종별·지역별 특성, 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서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 외의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조사와 서면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조사범위) ①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목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조사기간) ① 구청장은 조사대상 세목·기간·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최소한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조사 시작일 2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 사전통지 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은닉·조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전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회피하거나 폐업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세무조사의 연기 등)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연기 사유와 납세자보호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세무조사 연기 기간이 종료되거나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제4장 세무조사 진행

제19조(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등)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대상자에게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및 낭독,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납세자권리현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청렴서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의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제21조(도움을 받을 권리의 보장) 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대리인을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의 조사 참여 또는 의견 진술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직접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납세자의 권익보호) 조사책임자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시정요구가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세무조사 실시)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장소, 장부 등의 검사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할 때에는 그 영업이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효율적인 실시 및 조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회계장부 또는 관계서류 등의 일

부를 사본으로 제출받아 조서관청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장소) ①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서관청 등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적합한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시간)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대상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요구가 있거나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여러 과세기간(사업연도 또는 과세연도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조사범위 확대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7조(해명 요구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중 과세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불복청구 등에 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관련인 등으로부터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제28조(거래상대방의 조사) 구청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거래처 또는 관련인 등(이하 “거래상대방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제29조(금융거래 등의 확인)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지방세 탈루 혐의를 확인할 목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 등(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이하 “조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거래정보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등의 조회대상 금융거래 또는 조회계좌 등의 범위와 대상기간 등을 특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 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30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가 장부 등을 파기·은닉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지연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범칙사건조사의 실시,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누구든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세무조사의 종결

제31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조사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2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과세정보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해야 한다.

제33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장 보칙

제34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구청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폐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집행을 위해 조사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수칙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납세자권리현장 재중)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부서명) (성명) (인) (전화) (팩스) ○ 제출일 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제조업 () 건설업 () 판매업 () 운송업 () 기 타 ()	주요목적사업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납세자권리현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사업장)			
수령장소	* 교부장소가 조사관청인 경우 사유 기재		
귀 청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아래 서류를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현장을 낭독 받았으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권리보호 업무와 절차 등에 대해 설명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사업장)			

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시작부터 종결 후에도 금품·향응 또는 공무수행 목적 외의 사적 편의를 제공·알선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불이익 또는 징계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하고 이 서약서를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년월일

서약인(서명 또는
세무대리인(서명 또는

우리 조사공무원은 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탁이나 부정·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금품 및 향응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형사처벌 등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서명합니다.

년월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4호서식]

위임장

대 리 인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격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주소(사업장)			

연번	소속	직위/직책	성명	생년월일	자격

※ 별지 작성 가능

상기 세무대리인에게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인(서명 또는 인)

상호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생년월일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참여 또는 의견진술을 위하여 이 위임장을 조사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5호서식]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구 분	당 초	범 위 확 대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	~	
조사 기간	~	
기타 사항		
조사범위 확대사유		

- ※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끝.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